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 2. 5.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아동친화과장)
- 제출일자: 2026. 1. 21.(수)
- 회부일자: 2026. 1. 22.(목)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6. 2. 3.)

2. 제안이유

-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운영 (원장)	위탁기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월배로 95-17 (진천동)	675㎡ (지하1, 지상2)	50/42	現이인갑	5년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5년(2026. 7. 1. ~ 2031. 6. 30.)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 자문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재위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월배로 95-17)은 2016년 6월 개원하여 최초위탁(2016. 7. 1.) 및 재위탁(2021. 7. 1.) 중으로, 2023. 7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고, 2023. 11. 1.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 까지 유지 중이며, 2026. 6. 30.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재위탁 대상에 대하여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임.
- 보육 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4조의 대상 사무에 해당 하고,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